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74

발의연월일: 2022. 11. 3.

발 의 자:김상훈·지성호·김학용

김선교 • 김용판 • 성일종

유재옥 • 최춘식 • 권명호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 당국이 그과세정보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때에도 그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기관 등이 해당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수출입 기업이 자사의 과세정보를 세무관서로부터 받아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 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사후에 수입하는 사전송금 방식을 악

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등이 사전 송금명세와 사후 통관명세 등을 대조하여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상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수출입 급부·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및 제264조의9).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 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를 "제 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 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중"을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 를 대행하는 자 중"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 관련 급부·금융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수출입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 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5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가목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을 위한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의9의 제목 중 "과세자료"를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	제116조(비밀유지) ①
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	
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	
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u>수출입 관련 급부·금융지원</u>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
	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
	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
	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
	<u>치단체</u>

<신 설>

<u>5.</u>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수출입 급부·지
 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 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 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u>7.</u>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제1항제5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③ 세관공무원은 <u>제1항 및 제2</u> <u>항에</u>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 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u>자는</u>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도 아니 된다.

<신 설>

라 문서도 관세정상 또는
,
<u>④</u> 제1항부터 제
<u> 3항까지의 규정에</u>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기
목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7
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
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
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
보 제공 업무을 위한 기초자료
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
<u>다.</u>
<u>⑥</u>
<u>자 또는 제5항에 따라</u>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
<u>하는 자는</u>
<u>.</u>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
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4조의9(<u>과세자료</u> 비밀유지의 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u>제26</u> 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라	Į	ㅏ세	정.	보의	븨	안	전/	성	확	보	를
	<u>위</u>	한	조	치를	를 경	하여) ०	‡ 7	한디	<u>}.</u>		
	8											
								<u>I</u>	王늯	<u>:</u>	과	세
	<u>정</u>	보	기	제.	공	업	무	를	디	행	하	는
	<u>자</u>	F	<u>-</u>									
								,				
제	26	4조	의	9(<u>I</u>	<u></u> 누세	정	보	ָּבָּ	<u>Į</u>	과	세	<u>가</u>
	显	日	밀	유	기의	기무	<u>!</u>	위기	반이	4]	대	한
	처	벌)	1) [구음	- 2	갂	ই	에	해	당	하
	<u>는</u>	ス	누는	- — - -								
	<u>1.</u>	제	116	5조	제1	항	5	드는	- ;	제6	항	을
		위병	만 중	<u>}</u>	고	사	정	보	를	타	인	에
	-	게	제	공	또	는	누	설	하.	거ㄴ	}	목
	-	적	외	의	용.	도를	로 /	사-	<u>ਉ</u> ਨੂੰ	한 :	자	
	<u>2.</u>	제2	264	조.	의8	제[1항	5	드는	- Z	<u> </u>	항
		을	위	반	하ㅇ	चे	과	세기	자 š	로를	-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